의정활동보고서

제304회 정례회(2018. 10. 1 ~ 10. 15)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높은 가을하늘이 황금 들녘과 어우러지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손수 찾아 위문하시고 도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역에서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3일 제11대 첫 의원연수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은 이번 연수회에서 '소통과 화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행사 내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합된 모습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도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견인하던 철강과 모바일산업이 정체되고 더불어 인구감소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민선 7기의 목표로 지난 9월 3일 도정 운영 4개년계획을 발표하여 일자리, 문화관광, 저출산 극복, 농촌공동체 회복 등 핵심 사업을 담은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신바람 행복경북 조성을 위해 목표들을 많이 설정하였는데 수치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알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최근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를 기회삼아 경북이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때로는 비판도 하겠지만 도정의 비전을 공유하며 경북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열리는 이번 회기는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한해 마무리를 차분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여 다음 달 회의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 경 식

차 례

Ⅰ. 개 황 ····· 9

Ⅱ. 의사일정 ····· 10

Ⅲ. 의안처리 ····· 20

Ⅳ. 민원처리 ····· 21

Ⅴ. 본회의 보고사항 ····· 23

Ⅵ. 5분 자유발언 ····· 26

□ 윤승오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26

□ 김상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29

□ 이종열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32

□ 김영선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35

□ 임무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38

□ 조주홍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41

□ 나기보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44

□ 박차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47

부 록

□ 조 례 안(13건) ····· 53

□ 결 의 안(1건) ····· 117

□ 동 의 안(15건) ····· 120

□ 결 산 안(2건) ····· 143

□ 승 인 안(1건) ····· 149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04회 정례회는 2018년 10월 1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0월 15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11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8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0월 1일(월) 14시에 개의하여, 네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월) 11시에 개의하여 네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는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다음 달에 있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05회 정례회로 2018년 11월 6일 14시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다. 집회일시 : 2018년 10월 1일(월)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8년 10월 1일 ~ 10월 15일(15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88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9	1	3	2	2	1	1	1	2	6
누 계	452	36	56	56	48	42	43	49	63	59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월) 14:10 (제1차)	○ 5분 자유발언(윤승오 · 김상헌 · 이종열 · 김영선 의원) □ 안건처리 ○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10.15(월)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임무석 · 조주홍 · 나기보 · 박차양 의원) □ 안건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 · 출연 동의안 ○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 · 출연 동의안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2018·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월) 15:00 (제1차)	□ 안건처리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4(목) 11:0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0. 5(금) 11:00 (제2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 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 투자유치실 소관)	
10. 15(월) 10:40 (제3차)	□ 안건처리 ○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계속)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4(목) 11:00 (제1차)	□ 안건처리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 ○ 2019년도 정기분(1차)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10. 5(금) 11:20 (제1차)	▢ 안건처리 ○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동의안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4(목) 14:0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2018·2019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 5(금) 10:30 (제2차)	▢ 안건처리 ○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2(화) 11:00 (제1차)	▢ 안건처리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4(목) 11:00 (제1차)	▢ 안건처리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경산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2(화) 11:00 (제1차)	▢ 안건처리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0(수) 10:40 (제4차)	▢ 안건처리 ○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감사관·교육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 소관 •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 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의회사무처 소관	
10. 11(목) 10:40 (제5차)	▢ 안건처리 ○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월) 11:00 (제2차)	□ 안건처리 ○ 주요업무 보고의 건	

〈저출산 ·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월) 11:00 (제2차)	□ 안건처리 ○ 저출산 ·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월) 11:00 (제2차)	□ 안건처리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월) 11:00 (제2차)	□ 안건처리 ○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5(금) 11:10 (제2차)	▢ 안건처리 ○ 주요업무 보고의 건(공항추진기획단 소관)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5(월) 13:3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	

Ⅲ. 의안처리

※ ( )안은 제11대(제301회~제304회) 의회 누계

구 분		접수 ⓐ+ⓑ+©	처리 ⓐ+ⓑ	의결					철회 ⓑ	계류 ©	비고
				계 ⓐ	가결		부결	폐안			
					원안	수정					
계		32 (91)	32 (90)	32 (90)	29 (85)	3 (5)	0 (0)	0 (0)	0 (0)	0 (1)	
조례안	소 계	13 (29)	13 (29)	13 (29)	11 (26)	2 (3)	0 (0)	0 (0)	0 (0)	0 (0)	
	의회 제안	6 (16)	6 (16)	6 (16)	6 (16)						
	도지사 제출	7 (13)	7 (13)	7 (13)	5 (10)	2 (3)					
	교육감 제출	0 (0)	0 (0)	0 (0)							
규칙안		0 (0)	0 (0)	0 (0)							
예산·결산		2 (4)	2 (4)	2 (4)	2 (2)	(2)					
동의·승인		16 (19)	16 (18)	16 (18)	15 (18)	1				(1)	
건의안		0 (1)	0 (1)	0 (1)	(1)						
결의안		1 (13)	1 (13)	1 (13)	1 (13)						
기타안		0 (25)	0 (25)	0 (25)	(25)						

Ⅳ.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11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3 (7)	1 (1)			1 (2)	(1)	(1)	1 (1)	(1)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1)						(1)			
행 정 보건복지										
문 화 환 경	1 (1)							1 (1)		
농 수 산	1 (2)	1 (1)							(1)	
건 설 소 방	1 (2)				1 (2)					
교 육	(1)					(1)				
특 별 위 원 회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2 (5)	2 (5)				2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1)	(1)				
행 정 보 건 복 지						
문 화 환 경						1
농 수 산	1 (1)	1 (1)				1
건 설 소 방	1 (2)	1 (2)				
교 육	(1)	(1)				
특별위원회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Ⅴ.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32건(조례안 13, 결의안 1, 동의안 15, 결산안 2, 승인안 1)

2. 처리 의안 : 32건

○ 가결 의안 : 32건(조례안 13, 결의안 1, 동의안 15, 결산안 2, 승인안 1)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13건(원안가결 11, 수정가결 2)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건명	비고
1	'18. 9. 20	이재도 의원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2	〃	도지사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3	〃	〃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	이칠구 의원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	도지사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	김하수 의원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	도지사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및 조례 폐지 조례안	〃
9	〃	김준열 의원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	정영길 의원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	도지사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2	〃	〃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
13	〃	이재도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결 의 안 : 1건(원안가결 1)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18. 10. 15	의회운영위원장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 동 의 안 : 15건(원안가결 14, 수정가결 1)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18. 9. 20	도지사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원안가결
2	〃	〃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
3	〃	〃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
4	〃	〃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출자·출연 동의안	수정가결
5	〃	〃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6	〃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7	〃	〃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
8	〃	〃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
9	〃	〃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
10	〃	〃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
11	〃	〃	2018·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
12	〃	〃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
13	〃	〃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
14	〃	〃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
15	〃	교육감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결 산 안 : 2건(원안가결 2)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 고
1	'18. 9. 20	도지사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	〃	교육감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승 인 안 : 1건(원안가결 1)

연번	접수일	제 출 자	안 건 명	비고
1	'18. 10. 15	의회운영위원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4.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 : 13건

연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1	제4103호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 11. 1.	조례
2	제4104호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3	제4105호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4	제4106호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5	제4107호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11. 5.	〃
6	제4108호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2018. 11. 1.	〃
7	제4109호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	〃
8	제4110호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9	제4111호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
10	제4112호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11	제4113호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12	제4114호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3	제4115호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8. 11. 5.	〃

Ⅵ. 5분 자유발언

□ 2018년 10월 1일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윤승오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 노동자 복지 및 권익증진 관련 ≫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동권은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는 고용과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관련부서만 존재할 뿐 경상북도 130만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습니다.

도 본청 중소벤처기업과 내 노사협력팀에서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경북 130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경상북도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전담할 노동복지과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 단위로

운영하는 서울·경기, 과 단위로 운영하는 대구·충남을 비롯해 도내에서는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구미시의 노동복지과, 심지어 그보다 규모가 작은 영천시에서도 노동공동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문제가 경제정책·산업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현재의 부서 편제 아래에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팀 단위의 조직은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업무는 위축되고 협소한 시각의 경직된 행정과 노동존중 인식 부족의 관행적 행정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제도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경북의 많은 사업장, 특히 영세사업장 근로환경은 전국 최하위의 수준으로, 노동조합의 유무와 사업자의 경영방식에 따라 근로환경·임금·기업문화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재직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불러오며 경북지역 고용환경 안정과 인구증감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도내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노동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하게 되면 첫째, 노동자를 위한 행정업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동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책과 중장기적인 사업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현안에 맞는 노동정책 실행과 노동 인지적 행정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입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노동 권리를 확대·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노사분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 화합 및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은 노사분규 없는 청정 지역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곧 신규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넷째, 부서 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통해 노사 민정협력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노사화합 및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지역 고용안정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추구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일하기 좋은 경북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안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상북도 행정조직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 희생하고 땀 흘려온 노동자들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배려로 노동복지과를 신설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노동 존중 인식을 확산시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10월 1일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김상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 무상급식 관련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포항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헌 의원입니다.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무상급식이란 용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무상'이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 대상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1조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만 하는 의무급식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무상급식에 대해 "무차별적 복지다.", "부자급식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지원해야할 돈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복지정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런 무차별적 복지를 시행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30%까지 더 걷어야 할 것이라고 일반 국민들을 겁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경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겨우 읍·면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아직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과 동 지역 중학교의 경우도 100명 미만 초병설유치원과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일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무상급식을 지원받기 위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 잘못 만나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졸지에 저소득층이 된 것도 서러운데, 그것도 모자라 다른 친구들은 돈 내고 먹는데 나는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먹는 밥은 공짜밥이 아니라 눈칫밥입니다.
아이들이 돈 대신 자존심을 내고 먹는 밥입니다.

현재 초·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15개 시·도이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곳도 인천·세종·강원·전북·전남 등 5개 시·도입니다. 유일하게 대구·경북만이 아직 초등학교까지만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학교 이상은 확대하지 못해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이철우 지사께서는 초·중학교까지, 임종식 교육감께서는 임기 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기관장께서 우리 경상북도보다 재정여건이 더 열악한 시·도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을 줄이면 얼마든지 전면 의무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는 경상북도 예산의 0.8%밖에 되지 않는 교육지원예산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통 크게 교육예산을 늘려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은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당장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성인병과 미래의 의료복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10월 1일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이종열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 국가산채클러스터 관련 ≫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한 축인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산채자원의 확보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재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낙후된 기술과 산업화 기반을 혁신함으로써 산채 산업을 경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7월 민선 5기 김관용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시작되어 2014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6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총사업비 551억 원을 투입하여 영양군 일월면 도곡리에 국가거점인 한국산채개발원, 영양군과 강원도 양구군일대에 산채생산 연계지구를 각각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한국산채개발원 조성은 경북도와 영양군 파견 공무원과 한국산채개발원 채용인력으로 한국산채개발원 TF팀을 구성하여 도 산하 독립법인화를 추진, 경북도와 영양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사업 출발 당시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으며, 사업을 선점당한 강원도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려졌던 청사진과 비교해보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당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선행사업인 한국산채개발원은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경북도가 약속했던 운영비 50% 지원과 경북도 인력 파견 1명 및 전문인력 20명 가운데 3명 우선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선 5기 김관용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타를 신청하고 경북도와 영양군이 산채 산업을 경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가고, 도 총괄 주무부서인 산림자원과에서는 기본계획과 달리 완공 후에 운영비 50%를 지원하고, 인력채용은 위탁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주관부서인 미래융합산업과로 요구하라며 떠넘기고 있으며, 미래융합산업과에서는 주무부서인 산림자원과와 협의하라며 뒷짐만 지고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영양군은 위탁운영의 주체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은 물론 사업 시작을 위한 TF팀도 구성을 못한 채

경북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민선 7기 도정혁신 5대 과제 중 하나인 “도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과 배치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인 경북도와 영양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빠른 시간 내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경북도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한국산채개발원 조성을 위해 약속한 도 직원 파견 1명, 운영전문인력 20명 중 3명 우선 채용, 실시설계부터 운영비 50%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한국산채개발원 TF팀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합니다.

이철우 지사님,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이미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약속만 지키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지사께서 민선 7기 공약 8대 핵심분야 중 다섯 번째로 제시한 “소득 걱정 없는 농산어촌경북 만들기”와 일맥상통하고, 성공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10월 1일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김영선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스마트팜 혁신밸리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촉구 ≫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도차원의 체계적인 추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일 경북 상주는 첨단농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1,048억 원과 도비·시비·자부담 합쳐 1,6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이번 혁신밸리는 1,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이나 농업 전체 산업에 미칠 사전 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지부터 선정해 놓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하고 정보화 전략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4월 23일 공모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일 사업지를 선정하는 등 일사천리로 성급하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 농도 경북의 위상을 정립하고 첨단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준비 부족으로 놓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 농업의 미래발전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북 농업분야 단일 공모사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로서 사업시행자가 경북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357억 원 중 도비는 77억 원만 부담한 채, 사업비 280억 원과 운영비 등을 전적으로 상주시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도가 보다 주체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주관함은 물론 도비 부담도 대폭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둘째, 기존 농가들의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쏟아지게 될 농산물은 가격하락을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농가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당국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수출한다고 하지만 수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과연 내수시장 유출을 제한할 특단의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아예 생산시설을 없애고 연구단지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즉 농민의 삶에 끼칠 구체적인 영향 등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론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될 때 명실공히 민관협력의 올바른 사업,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넷째,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는 계획도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고자본·고기술의 사업인데 과연 청년들이 고자본의 창업자금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스마트팜 기술자 양성을 넘어서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빅데이터 관리 전국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얻는 핵심 데이터는 국가자산이므로 민간기업에 의해 사유화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 국가 차원의 생육데이터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북도민의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열망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10월 15일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임무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사태 관련≫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영주 출신 임무석입니다.

먼저 도민들로부터 도정 수행평가에서 좋은 평가와 지지를 받고 계시는 도지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여 년 넘게 영주의 흉물로 방치되어 가고 있는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의 정상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양 최대의 사계절 워터파크를 목표로 건설되다가 세계 금융위기 사태와 맞물려 자금압박으로 2008년 10월 28일 전체공정률 73%인 상태에서 부도 처리된 판타시온 리조트는 그 후 10년 넘게 법정 경매에서 낙찰과 재경매를 반복하며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및 대기업 투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판타시온 리조트는 도민과 영주 시민들로부터 행정불신, 정치불신을 받고 있으며, 차라리 귀신체험 마을로 만들어 달라는 자조 섞인 냉소를 듣고 있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조성 당시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은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서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 회의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까지 하였습니다. 영주 시민들 또한 판타시온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차리 창출과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북 북부지역이 '거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러 가는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습니다. 기공식 당시 정무부지사님이셨던 이철우 도지사께서도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참석하셨고 도지사 후보 시절에는 도지사에 당선되시면 판타시온 리조트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 가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에 영주 시민들은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북관광공사를 확대 개편하여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설립, 민간이 함께하는 문화관광사업 추진으로 경북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 내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타시온 리조트의 조속한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유치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판타시온 리조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경상북도가 추구하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헛된 구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화를 위해 영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투자 유치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

으로 나서주십시오. 1,000억 이상이 투자된 리조트를 방치하는 것은 소중한 지역자원의 낭비이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경북도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10여 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온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2019년 본예산 편성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된 사업예산, 특히 농로 포장, 농업기반시설 예산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신청을 배제하거나 삭감하지 말고 꼭 편성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국·도비 예산사업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도의원과 상의하여 업무처리를 하라"는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년 10월 15일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조주홍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태풍 피해 대책 촉구 관련 ≫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동안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경북도청·경북도교육청 공직자들의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 자원봉사와 행정적 지원에 영덕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잠시 동영상 자료와 사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6일 오전 5시간 동안 기록적인 309㎜의 집중폭우로 오십천 하류 강구항에 정박되어 있는 어선 13척이 무더기로 유실되고 전복,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어선 2.99에서 8톤 어민들의 앞으로의 생계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강구초등학교 교실동보다 2m 정도 낮은 운동장이 만수위가 되어 있고 교실 바닥까지 침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갑작스러운 침수로 경북 119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주민들을 구조하는 장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채우고 또 담이 무너지면서 강구시장의 갑작스러운 침수현장입니다. 7번

국도와 인접해 있는 강구시장의 침수로 3, 4시간 동안 7번 국도의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지난 10일 경북도는 태풍 콩레이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오늘부터 중앙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언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한 국고지원금의 추가지원금액 등은 대부분 하천·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에 지원이 되고, 피해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기껏해야 가구당 고작 100만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경감, 지방세·도시가스 감면, 농기계 수리비 일부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도 있지만 당장에 피해 주민들의 생존과 연계되는 실질적 혜택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도민은 행정과 의회를 믿고, 의회와 행정은 도민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북도와 도의회에 자연재난의 실질적 지원과 대책을 위한 두 가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침수 피해에 따른 저소득층과 서민, 상인들에게 최소한의 자립이라도 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극적인 법

개정 추진과 동시에 도 차원의 맞춤형 조례 제정에도 함께 해 주실 것과 둘째, 지진대책특별위원회처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와 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더 빈번한 현실에서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관할 수 있는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갑작스런 물난리 통에 아무것도 못 건지셨다는 어르신들의 호소, 알거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울먹이는 아주머니의 눈물, 말을 할 기력조차 없다며 죽고만 싶다는 상인들의 한숨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지켜주어야 한다는 호소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년 10월 15일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나기보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 김천~상주~문경(경북선)간 철도 조기 건설 촉구 관련 ≫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중부내륙과 남부내륙 철도사업의 단절구간인 김천~상주~문경 간 경북선 철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김천~상주~문경 간 경북선 철도 건설은 여러 차례 선배·동료의원님들이 경상북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북선 철도 조기 건설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경상북도의 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중부내륙 철도사업은 경기도 이천에서 문경까지 총길이94.3㎞에 국비 2조 1,866억의 예산으로 2013년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부내륙 철도사업은 김천~거제 간 총길이181.6㎞에 국비 4조 7,440억 원의 예산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상주~문경을 연결하는 경북선 철도사업은 2017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구 선정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 외에는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김천~상주~문경을 연결하는 경북선은 총길이 73㎞에 국비 1조 3,71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 사이의 단절구간인 김천~상주~문경 구간의 철도건설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남부내륙 철도사업을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조기 건설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김천~상주~문경 간 경북선 철도 건설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또는 예산반영 노력에 미흡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 김천~상주~문경 간 철도사업은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이 모두 완공된 이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중부내륙선은 2021년 완공이 예정되어있고 남부내륙선 건설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내륙선의 중간에 있는 김천~상주~문경을 잇는 경북선의 철도 건설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철우 도지사께서도 국회의원 시절에 김천~상주~문경 구간의 철도 건설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부내륙철도가 착공되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김천~상주~문경 구간 철도사업에 대해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선 철도의 건설은 낙후된 경북

북부권 발전과 수도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구간으로 반드시 조기 건설되어야 합니다. 경북선 철도 조기 건설을 위하여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년 10월 15일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박차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안용복 장군 동상 건립 촉구 관련 ≫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독도 영토주권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울릉도 도동항 입구에 안용복 장군의 동상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용복 장군은 조선 숙종 때 사람으로 1693년, 1696년 두 차례 일본을 다녀오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이고 두 섬의 영유권과 조업권이 조선에 있음을 공고히 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러한 안용복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독도 영토주권 홍보 강화를 위해 경북도는 2013년 10월에 울릉군 북면에 안용복기념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기념관은 울릉 도동항에서 33㎞나 떨어져 있어 애써 찾아가지 않는다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평균 30만 명 정도인데 안용복기념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2만 6,000명 수준으로 울릉도 관광객의 10% 정도만 안용복기념관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를 타고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접하는 상징물이 안용복 장군 동상이 된다면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에게 독도 영유권에 대한 홍보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도 안용복 장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포토 존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울릉도 관광의 랜드마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콜럼버스 동상, 중국 항구 서호 제방 입구에 서 있는 소동파 동상, 사천성 명월협 제갈공명 동상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천성 제갈공명 동상은 사천성 성도 랑중에서 176㎞를 북으로 이동하면 명월협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날 때 제갈공명이 만들어 이용했던 협곡 속에 만든 좁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섯 차례의 위나라 북벌이 번번이 실패하며 눈물을 삼키고 돌아왔습니다. 주군인 유비를 잃고 고통스러워했던 제갈공명의 고뇌가 동상에도 나타나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처럼 동상은 관광객들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홍보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역사를 기념하는 상징물로서 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감흥을 고스란히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동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용복 장군 동상이 울릉도 도동 선착장에 바로 세워진다면 도민과 관광객들이 동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안용복 장군과 독도에 대한 관심도 더욱 제고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도 바다에서의 이동과 생활은 육지에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 숙종 때 안용복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용복은 그 어려운 시기에 일본을 두 번씩이나 오간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독도영유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장군이 아님에도 안용복에게 장군 추서를 한 의미를 깊이 새기고, 우리 도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독도 영토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안용복 장군 동상을 울릉도 도동항에 건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13건) ····· 53

□ 결 의 안(1건) ····· 117

□ 동 의 안(15건) ····· 120

□ 결 산 안(2건) ····· 143

□ 승 인 안(1건) ····· 149

조 례 안

○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재도 의원('18. 9. 20)

○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18. 9. 20)

○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8. 9. 20)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칠구 의원('18. 9. 20)

○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지사('18. 9. 20)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지사('18. 9. 20)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하수 의원('18. 9. 20)

○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및 조례 폐지 조례안
도지사('18. 9. 20)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준열 의원('18. 9. 20)

○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영길 의원('18. 9. 20)

○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지사('18. 9. 20)

○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도지사('18. 9. 20)

○ 경상북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재도 의원('18. 9. 20)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소관 업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업무내용 또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제5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4.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청렴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경상북도『　　』의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정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정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특별정책위원) ① 도지사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정책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투자유치, 경제, 문화관광, 해양수산, 농업, 여성, 복지, 환경, 남북교류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정책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조사·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위원회 위원과 특별정책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정책위원에게는 별도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정책위원이 기업유치, 예산절감 등 도정에 기여한 경우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과금 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정책위원이 해당 분야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등 지급기준(제10조 제1항, 제4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액
회의참석 수 당	1회당 100,000원 한도에서 지급
자 문 수 수 료	1회당 1,000,000원 한도에서 지급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8년 10월 4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50명 이내의 특별정책위원의 위촉과 1천만원 이내의 특별성과금 지급은 위원 수 및 특별성과금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특별정책위원의 수를 30명 이내로, 특별성과금의 한도를 500만원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8조 3항 “50명 이내로 한다.”를 “30명 이내로 한다.”로 함.
○ 조례안 제10조 3항 “1천만원 이내에서”를 “5백만원 이내에서”로 함.
○ 조례안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를 수정안과 같이 신설함.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8조 3항 “50명 이내로 한다.”를 “30명 이내로 한다.”로 함.

○ 조례안 제10조 3항 “1천만원 이내에서”를 “5백만원 이내에서”로 함.

○ 조례안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8조(특별정책위원) ① ~ ② (생략) ③ 특별정책위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8조(특별정책위원)**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특별정책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특별정책위원의 수 축소
제10조(수당 등) ① ~ ② (생략) ③ 특별정책위원이 해당 분야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조(수당 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특별정책위원이 해당 분야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원안과 같음)	특별성과금 지급한도 축소
〈신 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 신설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를 “경상북도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중 “대구경북”을 “경북대구”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각종계획·정책”을 “각종 계획·정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기획조정실장이”를 “행정부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한 실무적 검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시·도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하여 과제발굴단을 둘 수 있다.

제16조 중 "위촉위원 또는"을 "위촉위원, 과제발굴단,"으로, "회의에 참석한"을 "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8년 10월 4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명과 내용 중 그동안 관례적으로 사용해오던 “대구경북”을 “경북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조례“를 “경상북도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조례”로 수정함.

○ 조례안 제1조(목적) “대구경북 한뿌리”를 “경북대구 한뿌리”로 수정함.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명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조례“를 “경상북도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조례”로 수정함.

○ 조례안 제1조(목적) “대구경북 한뿌리”를 “경북대구 한뿌리”로 수정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조례명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조례	**조례명**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조례	**조례명** 경상북도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과거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인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과거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인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경북대구**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좌 동〉
1. 시·도 상생협력 비전·전략 및 각종계획·정책	1. ---------- 각종 계획·정책	〈좌 동〉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좌 동〉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좌 동〉
② 도의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행정부지사가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좌 동〉
④ 위촉직 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학식,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한다.	④ ---------- ---------- ---------- ---------- ---------- ---------- 도지사 ---------- ---------- ---------- ---------- ----------.	〈좌 동〉
〈신 설〉	⑤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한 실무적 검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좌 동〉
제13조(관련기관의 참여 및 의견 청취) ① ~ ② (생 략)	**제13조(관련기관의 참여 및 의견 청취)** ① ~ ② (현행과 같음)	〈좌 동〉
〈신 설〉	③ 위원회는 시·도 공동 협력사업 발굴을 위하여 과제발굴단을 둘 수 있다.	〈좌 동〉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 과제발굴단, ---------- 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 ----------.	〈좌 동〉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지원) 도지사는 영 제9조의5의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이 영 제9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4.~9.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4.~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지원)** 도지사는 영 제9조의5의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이 영 제9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를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일자리”로, “위원회”를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일자리창출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일자리 창출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 일자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2. 도 일자리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본부장
3. 한국노총경북본부의장
4. 경북경영자총협회회장
5.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7.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⑤ 위원회는 일자리 발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종전의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해촉을 요청한 경우

제10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4조) 중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를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의 위원은 2018년 11월 16일까지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경상북도의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 ---- ---------- ---------- ----------.
제3조(위원회)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일자리 ---- ----------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4조(기능)** ---------- ----------.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일자리창출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1. ----------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
〈신 설〉	2.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2.·3. (생 략)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장 3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장은 일자리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청년일자리분과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일자리창출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청년·여성 및 서민일자리 발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일자리창출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 일자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2. 도 일자리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본부장 3. 한국노총경북본부의장 4. 경북경영자총협회회장 5.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7.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⑤ 위원회는 일자리 발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일자리분과위원회 2. 여성일자리분과위원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3. 서민일자리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8명 내외로 구성하고 분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각 분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회의를 개최	**제8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할 수 있다. 단, 전체 위원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각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도지사,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해촉을 요청한 경우
제12조(위원회 등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제10조(위원회 등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

현 행	개 정 안
1.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보좌	1. 위원장----------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제15조~제17조 (생 략)	제13조~제15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6조제2항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3.(생 략)	2.·3.(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법 제89조 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영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89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9.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신설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 운영

제3장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을 ”경상북도장애인 인권옹호기관 설치 및 운영“ 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 운영)”을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한다.

② 권익옹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 포함),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5.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6.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 사례관리
8.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9. 그 밖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제12조의 제목 “(센터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생활영역에서의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장애인복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 3. (생 략) 4.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0조(예산지원) (생 략) 1. (생 략) 2.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3. ~ 6. (생 략) ③ (생 략)	**제10조(예산지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3.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장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운영**
제11조(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례접수 및 상담 2. 차별금지, 권리홍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5.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분리 등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 6.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7.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② 권익옹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 포함),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6. 관계 기관·법인·단체·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 사례관리 8.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9. 그 밖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제12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민법」 제32조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삭제〉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제7조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실태조사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장애인 및 여성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한다. 1.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4조(구성)**〈삭제〉

현 행	개 정 안
2. 장애인,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관련 전문가 5.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및 권리구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삭제〉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삭제〉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17조(회의)**〈삭제〉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삭제〉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삭제〉
제20조(수당과 여비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과 여비 등)** 〈삭제〉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하고, 같은 조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0만원”을 “9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비”라 함은 경상북도에서 거주하는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매월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민간인”이라 함은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 승인을 받은 자로서 생계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뜻)** ----------- 뜻은 ----------. 1. ---- 란 ----------. 2. ---- 이란 ----------.
제3조(생계비의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말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생계비 지원기준은 세대당 월 70만원으로 하되,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조(생계비의 지원)** ① -------- 범위에서 ----------. ② ---------- 90만원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인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생략) 2. 기타 도지사가 생계비 지원을 중단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4조(지원제한)** ---------- 어느 하나에 ----------. 1.(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
   다. 시장·군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리 주체”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과 협력하여 어린이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
2. 어린이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할 것
3.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

제4조(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2.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교육계획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어린이 관련 디자인 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
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의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어린이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및 포상)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를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로 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1호) 중 “중앙

정부"를 "정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제2조제12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2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혁신도시발전위원회** -------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 ------ 혁신도시발전위원회---------- ---------- --------.
제2조(기능)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 10. (삭 제) 11.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신 설〉 12. 그 밖의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 혁신도시발전위원회 ---------- ----------. 1.~3.(현행과 같음) 4.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 ------- ---------- 5. 정부 ---------- 6.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 위원장 ----------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3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설교통부, 경상북도 및 김천시 혁신도시 업무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3.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에 속한 자 4. 경상북도의원, 김천시의원 및 지역사회를 대표한 자 5. 기타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위촉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지사인 위원장이 ----------
제6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임기)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소관 업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교육감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5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바로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교육감은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규정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4. 교육감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정비)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교육감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1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청렴서약서(제6조제5항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경상북도교육청 (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결 의 안 〓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의회운영위원장('18. 10. 1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1. 제안이유

○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18. 11. 6(월) 14:00(제1차 본회의)
- 2018. 11.21(수) 11:00(제2차 본회의)
- 2018. 11.22(목) 14:00(제3차 본회의)
- 2018. 12.11(화) 11:00(제4차 본회의)
- 2018. 12.20(목) 11:00(제5차 본회의)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2조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동 의 안

○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도지사('18. 9. 20)

○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도지사('18. 9. 20)

○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도지사('18. 9. 20)

○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출자·출연 동의안
도지사('18. 9. 20)

○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18. 9. 20)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도지사('18. 9. 20)

○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도지사('18. 9. 20)

○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도지사('18. 9. 20)

○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도지사('18. 9. 20)

○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도지사('18. 9. 20)

○ 2018·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도지사('18. 9. 20)

○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도지사('18. 9. 20)

○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도지사('18. 9. 20)

○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도지사('18. 9. 20)

○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18. 9. 20)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북도-중화인민공화국 후난성 간 자매결연 협정서 안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후난성(이하 "양측"이라 한다)은 양 지역 간 교류협력관계의 전방위적 강화를 위해 한중 양국의 유효한 법률과 규칙 및 행정적 절차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제1조 양 측은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매결연 관계에 부합하는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해 나간다.

제2조 양 측은 상호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경제통상, 문화예술, 관광, 교육, 농업, 과학기술, 미래산업 등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제3조 양 측은 상호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교류협력을 발굴한다.

제4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하고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본 협정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각 2부씩 작성하여 양 측이 각 1부씩 보관하며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18년 11월 일

대한민국 경상북도지사	**중화인민공화국 후난성인민정부성장**
이 철 우	**쉬 다 저**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러시아연방 연해주 간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러시아연방 연해주는(이하 양측) 1992년 11월 19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준수하며, 무역·경제, 과학·기술, 문화·인문 분야에서 한러 양국 관계 발전과 기여를 위해 노력한다.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러시아연방 연해주 간의 협력 확대에 대한 상호 이해관계를 고려하며, 다음에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

1.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법, 국제조약에 따라 무역-경제, 과학-기술, 문화-인문 분야의 양측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본 협정서의 목적이다. 양측은 본 협정의 성실하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양측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 경제, 산업, 무역 분야에서의 협력
   - 농업, 임업, 수산업, 에너지, 광업, 통신, 교통,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

-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사용과 자연보호 분야의 협력
-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및 프로젝트 공동연구 장려
- 예술,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 언론, 관광, 체육, 보건, 청년 분야의 협력

3. 양측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따라 본 협정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기타 계획안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을 위한 공동사절단 또는 업무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다. 본 협정서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계획 등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법령을 준수한다. 양측은 본 협정서의 실행을 위한 계약, 협정에서 발생된 약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법령에 근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양측은 상호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공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수적이고, 조직적인 경제·법률적인 조건을 만든다.

5. 양측은 무역-경제, 과학-기술, 문화-인문 분야의 다양한 박람회, 전시회, 기타 행사의 참가를 장려하며, 관련정보를 교환한다.

6. 양측은 무역-경제, 과학-기술, 문화-인문 분야의 사절단 및 전문가의 교환을 장려하며, 이와 관련된 활동을 검토한다.

7. 본 협정에 따라 양측으로부터 주고받은 정보를 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따라 다른 한쪽의 동의가 서면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허락된다. 그리고 양측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적, 산업적 기밀사항을 교환하지 않는다.

8. 양측은 본 협정서에 영향을 주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이 변경되는 경우, 통보하여야 한다.

9. 본 협정서는 제3자와 체결된 계약의 권리나 약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 본 협정서의 해석이나 적용 시 발생하는 분쟁은 양측의 대화와 상담을 통해 해결된다.

11. 양측이 동의한 경우, 별지작성을 통해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를 할 수 있다.

12. 본 협정서는 양측의 내부절차의 이행에 관한 통지서를 접수한 날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정서는 법적 효력중단 의향에 관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법적효력이 소멸된다.

본 협정서의 법적 효력은 본 협정서의 유효기간, 이루어진 계약, 약속, 동의 등의 이행 의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본 협정서는 2018년 11월 8일 포항시에서 체결된다. 한국어, 러시아어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각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경상북도지사	**러시아연방 연해주지사**
이 철 우	**안드레이 타라센코**
_____	_____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안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자·출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자출연 예 정 액	비 고
1	기획조정실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50,000	정책기획관
2	기획조정실	대구경북 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지원	4,600,000	정책기획관
3	기획조정실	한국지역 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8,000	정책기획관
4	기획조정실	지방공기업 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72,000	예산담당관
5	기획조정실	한국지방세 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17,673	세정담당관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자·출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자출연 예 정 액	비고
계		7개 기관	15개 사업	12,391,000	
1	일자리경제산업실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원	100,000	과학기술 정책과
2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운영	1,000,000	과학기술 정책과
3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팩토리보급 지원사업	2,000,000	과학기술 정책과
4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창조경제 펀드 지원	2,000,000	과학기술 정책과
5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테크노파크	포스텍 바이오펀드 조성 지원	200,000	과학기술 정책과
6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테크노파크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	400,000	과학기술 정책과
7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테크노파크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 운영지원	250,000	미래융합 산업과
8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테크노파크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300,000	미래융합 산업과
9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운영지원	300,000	미래융합 산업과
10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 연구원 사업지원	350,000	미래융합 산업과
11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 운영지원	900,000	미래융합 산업과
12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운영지원	571,000	미래융합 산업과
13	일자리경제산업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1,020,000	중소벤처 기업과
14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2,000,000	중소벤처 기업과
15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신용보증재단	청년창업 및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지원	1,000,000	중소벤처 기업과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중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추진”건과 “디랩벤처스(주)”의 “지방성장 벤처·창업기업 출자”건은 동의안에서 제외한다.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2019년도 정기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비 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건	3,524	10,78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2건	3,524	10,78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2. 주요내용

①『소방학교 전문교육관 신축』

- 목　　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기준 충족
- 사 업 비 : 8,540백만원(도비 8,540)
-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 위　　치 : 경북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산 31-13번지
- 취득재산 : 건물 1동, 건축연면적 2,600㎡

②『김천 율곡 119안전센터 신축』

- 목　　적 : 김천혁신도시 도시개발에 따른 급격한 소방수요 증가
- 사 업 비 : 2,240백만원(도비 2,240)
- 사업기간 : 2019. 2. ~ 2020. 11.
- 위　　치 : 경북 김천시 율곡동 1092-1번지
- 취득재산 : 건물 1동, 건축연면적 92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사용료 감면안

□ 목 적 : 혁신도시 내 연구실 구축(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을 통한 기업유치 도모

□ 사용기관 : 경북테크노파크(도 출연기관)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2. 12. 31.

□ 사용방법 : 무상

□ 사용대상

사 업 명	건 물 명	준 공 시 기	소 재 지	건 축 연면적	신청 면적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Open Lab설립)	산학연유치 지원센터	'16. 2.	김천시 율곡동 790	11,328㎡	772.63㎡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안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자·출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자출연 예 정 액	비고
계		3개 기관	3개 사업	3,627,000	
1	여성가족 정책관	(재)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지원 출연금	1,559,000	
2	〃	(재)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	도 청소년육성재단 사무처 운영 출연금	218,000	
3	〃	경상북도청소년 수련원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 출연금	1,850,000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안

(단위 : 천원)

연 번	실 국	출자·출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자출연 예 정 액	비 고
계		1개 기관	2개 사업	1,306,000	
1	교육정책관	(재)경북장학회	경북학숙 운영비	1,084,000	
2	교육정책관	(재)경북장학회	경북학숙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22,000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안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 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 연 예정액	비고
계		1개 기관	3개 사업	12,500,000	
1	자치행정국	새마을세계화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기금	500,000	새마을봉사과
2	자치행정국	새마을세계화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운영비	2,500,000	새마을봉사과
3	자치행정국	새마을세계화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사업비지원	9,500,000	새마을봉사과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안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편성목	출연기관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2개 기관	3개 사업	5,415,261	
1	사회복지과	출연금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	경북 행복재단 운영	2,605,253	
2	장애인복지과	출연금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	1,047,758	
3	사회복지과	출연금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재)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지원	1,762,250	

2018 ·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 ·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2018 ·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 · 출연안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자 · 출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자출연 예 정 액	비 고
계		5개 기관	8개 사업	32,110,000	
1	문화관광체육국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운영지원	4,400,000	문화예술과
2	문화관광체육국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개보수	500,000	문화예술과
3	문화관광체육국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지원	1,550,000	문화산업과
4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엑스포	문화엑스포 운영지원	4,500,000	문화산업과
5	문화관광체육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운영 지원	70,000	문화유산과
6	문화관광체육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그룹웨어 구축	70,000	문화유산과 (2018년)
7	문화관광체육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그룹웨어 유지보수	20,000	문화유산과
8	문화관광체육국	경상북도관광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출자	21,000,000	관광정책과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안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연 기관명	사 업 명	출 연 예정액	비 고
계		1개 기관	8개 사업	3,481,000	
1	환경산림자원국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	2,741,000	환경정책과
2	〃	〃	환경문화 활성화사업	200,000	〃
3	〃	〃	야외교육장 개보수 공사	300,000	〃
4	〃	〃	원내 안전울타리 설치 공사	80,000	〃
5	〃	〃	숲속교실 시설보강 사업	50,000	〃
6	〃	〃	환경교육관 결로 정밀진단 기술용역	20,000	〃
7	〃	〃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	60,000	〃
8	〃	〃	환경교육 재능기부 봉사	30,000	〃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안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자·출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자출연 예 정 액	비 고
계		1개 기관	2개 사업	5,494,000	
1	농축산유통국	(재)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농민사관학교출연금	1,472,000	농식품유통과
			유통전담기관 설립·운영	4,022,000	농업정책과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자·출연안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자·출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자출연 예 정 액	비고
계		2개 기관	2개 사업	2,000,000	
1	해양수산국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900,000	항만물류과
2	해양수산국	(재)독도재단	독도재단법인운영지원	1,100,000	독도정책과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 취득재산 27,295,208천원

- **토 지 : 9,127㎡ 933,027천원(2건)**
- **건 물 : 9,304㎡ 26,362,181천원(5건)**

o 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신설 유치원 부지 취득(1건)

- (가칭)예담유치원	1,926㎡(582평)	817,091천원

o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부지 취득(1건)

-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실습지 매입)	7,201㎡(2,178평)	115,936천원

o 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신설 유치원 건물 취득(1건)

- (가칭)예담유치원	1,899㎡(574평)	5,908,270천원

o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물 취득(4건)

- 기계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1,453㎡(439평)	3,067,409천원
-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실습동 증축)	3,241㎡(980평)	9,455,694천원
- 유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1,871㎡(566평)	5,205,558천원
- 안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840㎡(254평)	2,725,250천원

□ 처분재산 3,464,484천원

- **토 지 : 64,297㎡ 2,135,659천원(4건)**
- **건 물 : 7,594㎡ 1,175,311천원(4건)**
- **공작물 : 224식 139,367천원(4건)**
- **입목죽 : 1,145주 14,147천원(4건)**

o 폐교재산 매각(4건)

- (구)임고중학교	17,281㎡(5,227평)	1,357,221천원
- (구)안평중학교	17,933㎡(5,425평)	953,808천원
- (구)안평중학교 신평분교장	12,077㎡(3,653평)	236,375천원
- (구)단북초등학교	17,006㎡(5,144평)	917,080천원

〓 결 산 안 〓

○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지사('18. 9. 20)

○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감('18. 9. 20)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이에 원안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1. **세입·세출 결산**

□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 세입 결산액 8조 5,330억 6천만원

○ 세출 결산액 7조 9,146억 5천만원

○ 잉여금 6,184억 9백만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 3,128억 5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7억 5천 2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18억 5천 2백만원임.

(1)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7조 7,772억 6천 7백만원

○ 세출 결산액 7조 2,204억 4천 2백만원

○ 잉여금 5,568억 2천 5백만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 3,017억 5천 3백만원과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4천 1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13억 3천 1백만원임.

(2) 기타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 등 7개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7,557억 9천 2백만원

○ 세출 결산액 6,942억 8백만원

○ 잉여금 615억 8천 4백만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 110억 5천 2백만원과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1천 1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5억 2천 1백만원임.

2. 기금결산

- ○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4,552억 4천 7백만원
- ○ 당해 연도 조성액 6,769억 1천만원
- ○ 당해 연도 사용액 4,409억 4천 9백만원
- ○ 당해 연도 말 조성액 1조 6,912억 8백만원임.

3. 채권결산

- ○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3,247억 7천 2백만원
- ○ 당해 연도 발생액 6,862억 2천 8백만원
- ○ 당해 연도 소멸액 6,508억 5천 2백만원
- ○ 당해 연도 말 현재액 1조 3,601억 4천 8백만원임.

4. 채무결산

- ○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1,752억 7천만원
- ○ 당해 연도 발행액 2,873억 9천 1백만원
- ○ 당해 연도 상환액 1,725억 6천 4백만원
- ○ 당해 연도 말 현재액 1조 2,900억 9천 7백만원임.

5. 예비비 지출

- ○ 예비비 예산액 372억 8천 1백만원
- ○ 지출결정액 166억 7천 7백만원
- ○ 지출액 166억 4천 8백만원
- ○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 2천 9백만원임.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이에 원안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세입 결산액 4조 9,604억 7천 4백만원
   - 세출 결산액 4조 4,286억 6천 2백만원
   - 차 인 잔 액 5,318억 1천 2백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740억 9백만원, 사고이월액 93억 8천 6백만원 및 계속비이월액 2,211억 9천 5백만원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보조금 집행잔행 8억 7백만원, 지방회계법 제19조에 근거한 지방채 상환액 401억 2천 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62억 8천 6백만원임.

2.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2,330억 5천 4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1,564억 3천 2백만원에 비하여 766억 2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 내역은
   - 공무원복지기금 39억 1천 3백만원
   -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291억 4천 1백만원

3. 채권현재액

   2017회계연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041억 7천 7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1,084억 5천만원에 비하여 42억 7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4. 채무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9,708억 8천 8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1조 894억 6천 1백만원 비하여 1,185억 7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5. 예비비 지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 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485억 6천 1백만원
- 지 출 결 정 액 173억 6천 8백만원
- 지 출 액 170억 2천만원
- 지출결정액 중, 이월액은 2억 4천 9백만원이고
  미집행액은 9천 9백만원이며

• 그 사용내역은 화재로 인한 교육시설 응급복구비, (구)석계초 무단점유 해결 및 재산회복을 위한 강제집행 비용, 안동동부초 석축붕괴 피해복구비,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등임.

6. 재무회계 결산

1) 2017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 자산은 5조 3,947억 3천 9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총자산 4조 9,162억 6천 7백만원에 비하여 4,784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자 산 5,597억 2천 4백만원
- 투 자 자 산 3,377억 4천 2백만원

- 유 형 자 산 4조 4,959억 3천만원
- 무 형 자 산 1억 1천 5백만원
- 기타 비유동자산 12억 2천 8백만원임.

2) 2017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8,357억 4천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8,948억 4천 4백만원에 비하여 591억 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부 채 340억 9천 1백만원
- 장기 차입 부채 7,997억 6천 8백만원
- 기타비유동부채 18억 8천 1백만원임.

3) 2017회계연도 말 재무회계 상 순자산은 4조 5,589억 9천 9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순자산 4조 214억 2천 3백만원에 비하여 5,375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고 정 순 자 산 4조 2,625억 6백만원
- 특 정 순 자 산 2,330억 5천 5백만원
- 일 반 순 자 산 634억 3천 8백만원임.

4)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5,375억 7천 6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2,859억 2천 3백만원에 비하여 2,516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수 익 4조 4,835억 2천 8백만원
- 비 용 3조 9,459억 5천 2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5,375억 7천 6백만원임.

〓 승 인 안 〓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장('18. 10. 1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10월 15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기간

○ 2018. 11. 7 (수) ~ 11. 20 (화) / 14일간

2. 감 사 반 : 각 상임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편성 · 운영

3. 대상기관 및 현지확인 대상

○ 감사대상 : 84개 기관

가. 경상북도의회사무처 : 1

나. 경상북도 : 36〔본청(지역본부 포함) 18, 직속기관 및 사업소 18〕

다. 경상북도교육청 : 19〔본청(직속기관 포함) 7, 시군 교육청 12〕

라. 지방공기업 : 2〔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마. 지방의료원 : 3〔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바. 도 출자 및 출연법인 : 23〔경북행복재단 등〕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0조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 첨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의정활동보고서

(제304회 정례회)

●

2018. 11. 인쇄 / 2018. 11.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

<비매품>